

제 33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세부규정

제 1조 [목적] 제 33대 선관위는 한인 동포사회의 대표이며 리더인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보다 많은 동포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방침]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혼탁 선거를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 풍토가 조성되지 않게 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 운영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위원회]

제 1항 [기본 업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켜 공정, 정대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한다.

제 2항 [위원회 구성] 본 회 선거관리규정 제 2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 3항 [선거위원업무] 선관위원들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2) 재무위원 2인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회계의 출납을 담당한다.
- 3) 감사 2인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가 끝난 후 모든 서류에 대한 감사를 10일 이내에 실시하여 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4) 사무국장은 재무나 감사업무 외에 모든 선거 관련 실무를 관리하여 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4항 [선거관리요원] 선관위 결정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실무요원을 임명한다.

제 5항 [선거관리사무국] 선거관리규정 제 3조에 의거, 선거관리 사무실은 한인회관 내에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 주소: 981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전화: 323 - 732 - 0701 (팩스 겸용)

제 6항 [직무기간] 2016년 3월 9일부터 임무가 주어지며, 당선확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해체한다.

제 7항 [선관위 의결]

- 1) 모든 선관위 의결은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의 개체를 위해 긴급소지권을 갖는다.(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가능)
- 3) 선관위원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한인회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선거일정] 본회의 33대 선거 일정은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 5조 및 제 9조에 의거한다.

제1항 [후보자등록] 2016년 5월 4일(수) ~ 5월 5일(목), 양일간, 오전10시~오후3시마감
2016년 5월 6일(금), 오전 10시, 후보자 기호 추첨

제2항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30일 내에 재등록을 실시하며, 그 이후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현 한인회 이사회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3항 [투표소 및 투표방법] 정관 제4조<관할>에 의거하여 투표소는 하기 장소에 설치하고 편리한 지역투표소에서 투표한다.(단, 장소는 변경 가능하다.)

- 1) 제 1투표소 : LA 한인회관
- 2) 제 2투표소 : LA 지역
- 3) 제 3투표소 : 다운타운
- 4) 제 4투표소 : 글렌데일/라크라센타/라케냐다 지역
- 5) 제 5투표소 : 세리토스
- 6) 제 6투표소 : 토렌스
- 7) 제 7투표소 : LA 동부
- 8) 제 8투표소 : 벨리/발렌시아 지역

제 4항 [참관인 등록] 2016년 5월 13일(금), 오전10시 - 오후 5시 마감

제 5항 [투표 일시] 2016년 5월 21일(토), 오전7시 - 오후 6시 마감

제 5조 [입후보자등록 및 자격사항]

제 1항[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별지#1참조)

제 2항 [등록 신청]

- 1) 입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배부
: 2016년 4월18일(월) ~ 4월20일(수), 3일간, 오후12시 ~ 오후3시

제 3항 [한인회장 후보등록 서류]

- 1) KAFLA F1-1/ F1-2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2) KAFLA F2 : 입후보자 이력서
- 3) KAFLA F3 : 입후보자 한글 서약서
- 4) KAFLA F4 : 입후보자 영문 서약서
- 5) KAFLA F5 : 선거 대책 본부 구성 보고서
- 6) KAFLA F6 : 현직 회장, 이사장 사임에 대한 각서
- 7) 한국과 미국 범죄기록 조회결과 증빙서류
- 8) 입후보자 거주신분 증명서 사본 (영주권 혹은 미국 여권)
- 9) 회장 입후보자 또는 배우자(입후보자와의 관계증명서 첨부)의 최근 7년 이상 Los Angeles County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틸리티Bill 또는 DMV서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Loan서류 등)원본 혹은 사본,
- 10) 10인의 추천서 동봉(신분증 사본 포함) 단, 정회원에 한한다.
- 11) 회장 입후보자 상반신 사진 3매 (칼라 3.5" x 4.5")
- 12) 전, 현 한인회의 이사나 임원으로 선거일 기준 최근 10년내 2년 이상 봉사한

자이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 활동한 소속단체장의 확인서, 소속단체의 비영리단체 주정부 등록서류, 비영리단체 증명서, 단체 최근 3년 IRS세금보고 서류(990 or 990 Ez)

13) 회장입후보 등록금 10만불(Cashier' s Check Only)

14) 입후보 예정 당사자에 한해 등록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자 본인에 한해 등록서류를 접수한다.

제 4항 [신원조회]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 4조에 의거 입후보자와 관련된 자격의 투명성을 선관위 대외비로 입후보자의 범법 사항에 대한 신원조회의 동의를 얻어 조회하도록 한다.(별지#1참조)

제 5항 [등록금]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서류와 규정된 등록금을 회장후보 등록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Check Payable to Korean American Federation Presidential Election Committee of LA

- 1) 회장입후보등록금 \$100,000불(Cashier' s Check only)은 회장입후보등록비 \$50,000불과 선거비용 \$50,000불로 구분한다
- 2) 납부된 금액\$100,000불은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3) 자진 사퇴, 또는 선거관리 규정위반으로 인한 자격박탈 등의 중도탈락자에게는 입후보등록비나 선거비의 구분과 상관없이 납부된 금액 \$100,000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4) 회장후보등록비 \$50,000은 입후보자 마감일 후 2일 내 한인회에 인계하며, 한인회는 인계된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한인회에 재 인계한다. 선거비용 \$50,000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선거비용 초과시, 회계보고서와 함께 예상 초과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인회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48시간 내 즉각적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는 정관 제 6조 3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는 회장후보등록비에 한하는 지출을 결의할 수 있다.
- 5) 선거비용 \$ 50,000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장 후보 등록비와 함께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 (6) 본 선거에 부득이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한인회에 인계할 선거비용 잔액에서 선 충당하며, 인계 후에는 한인회에서 그 비용을 감당한다.
- (7) 입후보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별도 양식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3참조)

제 6항 [등록 접수장소]

- 1) 접수 장소: 33대 선관위 사무소 (LA 한인회관)
- 2) 추후 접수된 서류 중 미비된 점이 발견될 시,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이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7항 [후보자격 취소]

- 1) 입후보자들의 등록 서류에 의도적인 허위 사실 기재나 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후보자격이 취소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 기재나 문서 위조 사실”이란 한인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결정적인 제약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 2) 회장 입후보자의 신원 조회 결과,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 4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후보자격이 취소된다.

제 6조 [투표권자]

제 1항 [자격]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 6조에 정한 바와 같이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DMV 발행 아이디나 운전면허증, 영사관 발행 아이디를 가진 자(여권필수지참) 단, 외국 성을 가진 사람은 여권이나 본인이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별지#4참조)

제 2항 [투표용지 양식 및 기표 방법]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투표용지 양식과 기표방법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공고한다.

제 7조 [개표]

제 1항 [개표장소] LA 한인회관 대회의실

제 2항 [개표참가자격] 선관위원, 각 입후보자 참관인 2인, 선관위가 임명한 시큐리티 가드 또는 경찰포함3인, 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 대표 각 1인 (언론사증 부착) 단, TV 방송사는 카메라 기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으로 한다.

제 8조 [당선]

제 1항 개표집계 결과 최다 득표자가 회장 당선자가 되며 최고 득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재검을 하고 재검 결과도 동점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회장에 당선된다.

제 2항 개표 후 선관위는 최다 득표 당선자를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일 기준 3일내 당선공고를 실시한다.

제 9조 [벌칙 사항] 본회 선관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 탈락 및 당선을 무효화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

제1항 단독 입후보할 목적으로 타입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방해하거나 매수할 때

제2항 선거 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신공격, 선전, 중상 모략하여 혼탁선거로 판정되어, 선관위로부터 2번 서면경고를 받을 시

제3항 입후보자 또는 그 참관인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업무 진행을 방해할 시

제4항 본 선관위에 제출된 제반 서류 중 한인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결정적인 제약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기재, 문서 위조 사항이 발견될 시

제5항 이중투표 적발 시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를 무효처리하며, \$10,000(일만불)의 벌금을 해당 투표자에게 부과한다.

제6항 입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서류배부일로부터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자격으로 선관위의 승인 없이 25인 이상의 어떤 형태 모임에 참석하거나, 투표권자에게 금품 및 현금을 제공하는경우,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경우(별지#2참조)

제7항 입후보자 및 예정자는 서류배부일로부터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일체의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한다.

제8항 특정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

- 제9항 입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홍보활동) 위반 시
- 제10항 입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자 선거운동)를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2번 서면경고를 받을 시
- 제11항 벌칙사항의 제재로 인해 후보자탈락 및 당선무효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보의 입후보등록금 10만불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한다.(별지#3참조)
- 제12항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부정선거운동 행위를 고발 받았을 경우, 그 부정행위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서류를 육하원칙에 맞게 직접 선관위에 제출해야 접수가 된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13항 이외에도 일반선거에 비해 부정선거로 판단되는 경우 선관위 의결에 따른다.

제10조[유권해석]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선관위원 재적5인 이상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본 선거관리세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여 회장을 선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선관위 구성]

- 1) 선거관리 위원은 9 인 이내로 한다.
(단, 지역투표소 증설시 각각 1 인이 추가되며, 2 항에 의해 선출한다.)
- 2) 선거관리 위원장 1 인 및 선거관리위원 4 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정관 제 6 장 2 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 3) 선거관리위원 4 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인회 회장이 임명한다.
- 4)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60 일 전까지 구성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부서를 선출한다.
부위원장 1 인, 재무위원 2 인(재무담당), 감사 2 인, 사무국장.
- 6) 선관위의 결정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및 상기 인사 전원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7)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각 개인은 중립의 원칙을 지킨다.
- 8) 상기 2 조 7 항을 위반시에는 정관 제 6 장 1 조 3 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 소명을 거쳐 정관 제 6 장 2 조의 일반의결 원칙에 따라 제명처리 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 조 2 항과 3 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다.
규정위반의 주체가 선관위원회의의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소명을 거쳐 성원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으며,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본 선거관리 규정제 2 조 2 항과 3 항에 따라 즉각적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선거 사무국]

- 1)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2) 선관위는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선거를 위한 특정전문업체를 선정해 업무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
- 3) 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준수한다.

제 4 조 [입후보자 자격]

-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정회원 으로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 및 한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 2) 또한 선거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봉사활동 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3) 회장은 위의 자격요건 외에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7년 이상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 a) 최근 10년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또는
 - b)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 등록 개시일 기준 최근 7년 내 3년 이상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활동 한 자로 한다. 위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IRS 에 Required Annual Filing(990 or 990 Ez) 절차를 제대로 마친 단체에 한한다.
- 4) 입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인 경우,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 5) 사회적(윤리적,금전적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는 아니어야 한다.

제 5 조[후보 등록 절차]

- 1) 회장 입후보자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와 소정 금액을 선거일(투표일) 15일전에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하며, 모든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KAFLA F1-1/ F1-2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2) KAFLA F2 : 입후보자 이력서
- 3) KAFLA F3 : 입후보자 한글 서약서
- 4) KAFLA F4 : 입후보자 영문 서약서
- 5) KAFLA F5 : 선거 대책 본부 구성 보고서
- 6) KAFLA F6 : 회장 입후보자 신원조회 동의서
- 7) KAFLA F7 : 현직 회장, 이사장 사임에 대한 각서
- 8) 입후보자 거주신분 증명서 사본 (영주권 혹은 미국 여권)

- 9) 회장 입후보자 또는 배우자(입후보자와의 관계증명서 첨부)의 최근 7년 이상 Los Angeles County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틸리티 Bill 또는 DMV 서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 Loan 서류 등) 원본 혹은 사본,
- 10) 10인의 추천서 동봉 (신분증 사본 포함) 단, 정회원에 한한다.
- 11) 회장 입후보자 상반신 사진 3매 (칼라 3.5" x 4.5")
- 12) 전, 현 한인회의 이사나 임원으로 선거일 기준 최근 10년내 2년 이상이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 활동한 소속단체장의 확인서, 소속단체의 비영리 단체 주정부 등록서류, 비영리단체 증명서, 단체 최근 3년 IRS 세금보고서류
- 13) 회장입후보 등록금 10만불(Cashier's Check Only)
- 14) 입후보 예정 당사자에 한해 등록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자 본인에 한해 등록서류를 접수한다.

2) 회장입후보등록금 내역 및 사용

- 1) 회장입후보자는 회장입후보등록비 \$50,000 불과 선거비용 \$50,000 불, 총 십만불 (\$100,000.00)을 상기 제 5 조 1 항에 의거해 납부한다.
- 2) 납부된 금액 \$100,000.00 은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3) 자진사퇴, 또는 선거관리 규정위반으로 인한 자격박탈 등의 중도 탈락자에게는 입후보등록비나 선거비의 구분과 상관없이 납부된 금액 \$100,000 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4) 회장후보등록비 \$50,000 은 입후보자 마감일 후 2일 내 한인회에 인계하며, 한인회는 인계된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한인회에 재 인계한다. 선거비용 \$50,000 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선거비용 초과 시, 회계보고서와 함께 예상 초과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인회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48 시간 내 즉각적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는 정관 제 6 조 3 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는 회장후보등록비에 한하는 지출을 결의할 수 있다.
- 5) 선거비용 \$50,000 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장후보등록비와 함께 당선일 기준 20 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 6) 본 선거에 부득이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한인회에 인계할 선거비용 잔액에서 선 증당하며, 인계 후에는 한인회에서 그 비용을 감당한다.

제 6 조 [투표인 자격 및 기호추첨, 선거권자 확인]

- 1)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 세 이상의 한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 2) 회장입후보자의 기표번호는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추천으로 정한다.
- 3)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 증명이 되는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7 조 [투표용지와 투표시지참물]

- 1) 투표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입후보자 성명을 기호 순으로 기재하여 선관위 확인, 날인된 것만 유효하다.
- 2) 투표 시 지참물은 DMV 발행 운전면허증, DMV 발행 아이디, 총영사관 발행 아이디 중 하나로 한다.

제 8 조 [기표방식]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도구로 표시하여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제 9 조 [선관위 공고 및 홍보사항] 선관위는 공고 및 입후보자 홍보를 다음과 같이 총괄한다.

- 1) 선거실시 일자 공고;
- 2) 입후보자 기표 번호 공고;
- 3) 투표용지 양식과 기표방법 공고; 및
- 4) 결산내역 공고

제 10 조 [입후보자선거홍보 활동]

-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막대한 지출을 막고, 금품, 향응 제공 등의 퇴폐적인 선거를 막기 위하여 입후보자들의 모든 홍보를 총괄하며, 광고매체는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인쇄물 광고, 인터넷 및 이메일, SNS광고 등을 망라한다.

제 11 조 [입후보자 선거 운동]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

- 1)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후 즉시 선거법에 적용되며, 25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

제 12 조 [투표소 참관인]

- 1) 각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2 인의 참관인을 정하여 투표 10 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 2) 참관인은 선거인, 투표용지, 서명확인, 투표과정을 지키고 감시하며 선관위 관계자와 협력한다.
- 3) 참관인은 선거 진행 방해가 되는 일체의 언사와 행동을 쓸 수 없다.
- 4)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자신의 투표시 외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다.

제 13 조 투표소 설치 장소와 투표함 수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 14 조 [투표함 관리 보존]

투표함은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함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봉합, 날인하여 규정된 장소에 함께 운반한다.

제 15 조 [벌칙 사항]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시, 후보자격 탈락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

- 1) 단독 입후보하기 위해 타 후보자를 실질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매수한 경우;
- 2) 선거 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선전, 인신공격, 중상모략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 악화시켰다는 선관위의 판정으로 2 회 서면경고를 받을 시;
- 3) 금품 수수, 음식물제공, 퇴폐, 부정선거로 판정될 시;
- 4) 후보자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 선거 업무 방해 시;
- 5) 선관위에 제출된 제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중대한 허위 및 위반 사항 발견시 ;
- 6) 입후보자 홍보활동 위반시;
- 7) 선관위는 제 15 조 1~6 항 위반사항을 적발 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지하며, 서면통지 전달 후 24 시간 안에 당사자의 직접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제 18 조의 결의에 따라 벌칙을 결정한다. 서면통지 전달은 직접전달, 우편, Fax, E-mail, Electronic Communication, 등 유사한 보편적 방법을 망라한다.

제 16 조 [당선 및 재선거]

- 1)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하며 동수일 경우, 다시 재검하며, 또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등록 마감일까지 회장 입후보등록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3) 입후보자가 2인인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 상실 및 탈락하면 남은 후보는 자동으로 무투표 당선된다.
- 4)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이 상실 및 탈락되면 남은 후보는 선거를 실시한다.
- 5) 입후보자 모두 자격 상실 및 탈락한 경우, 새 후보자로 재선거를 실시하며, 자격이 상실된 입후보자는 재입후보 할 수 없다.
- 6) 입후보자 전원이 자격상실 및 탈락될 시는 선관위는 15일 이내 재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 7) 선관위는 상기 6항에 따른 재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자동 해체되며, 해체일로부터 2일 이내, 제 5조 2항에 따른 회계보고와 별도로, 선거비용 잔액을 한인회에 인계하며, 이후 모든 결정은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18 조 [선관위 결의]

- 1) 모든 선관위 결의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3) 선거관리 규정을 제외한 회장선거 실행을 위한 선거세부규정 및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한인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보완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원칙인 본 한인회 정관 제 6 장 2 조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다.

2016 년 3 월 9 일

이전개정일

:2011 년 10 월 5 일

:2013 년 9 월 18 일

:2016 년 1 월 15 일

:2016 년 3 월 9 일